

「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」 소속시설 직원 채용(5차) 공고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돌봄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
소속시설 직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9월 17일

재단법인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이사

I 채용 개요

○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

구 분	채 용 분 야	선 발 인 원	담 당 업 무	비 고
계		4명		
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	고객지원팀장	1명	■ 고객지원팀 업무 총괄	경력
	운전원	2명	■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운행 업무	경력
대전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	업무직 (대리)	1명	■ 사회서비스 교육 훈련 및 지원, 홍보 업무	신규

※ 최종합격자는 6개월간 수습기간 운영을 거쳐 근무 적격자에 한해 정식 임용

○ 응시자격

구 분	세 부 자 격 기 준
공통자격	■ 18세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년(만 60세)에 달하지 아니한 자
	고객지원팀장
	- 공고일 현재 주소(주민등록)가 대한민국에 있는 자
	운전원, 업무직(대리)
	- 아래 ①, ②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①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※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. ② 공고일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

분야별 자격	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/ 고객지원팀장
	■ 아래 ①,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* 직무분야: 일반행정 및 사무관리
	운전원
	■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1)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(※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)를 취득한 자 2) 택시운전 자격 혹은 버스운전 자격을 취득하거나 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 후 자격을 취득한 자 3) 20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사업용 자동차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버스운전자 양성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 운전을 직무로 하는 군인이나 의무경찰대원으로서 해당 사업용 자동차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전경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거나 소속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 4) 최근 3년 이내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(재발급 포함) 5) 최근 5년 이내 무사고 경력자 6)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 이상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※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,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에 따름
	업무직(대리)
	■ 아래 ①, ② 중 하나에 해당 하는 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학사 학위 이상인 자 ②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업무 관련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

※ 경력인정 범위 : 정규직 또는 1년 이상 계약직만 경력 인정

○ 응시자격 및 제한사항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7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.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9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0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1.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1)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- 2)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12.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취업할 수 없다.
13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17조제2항, 제3항,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
14. 경력, 학력 및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자
15.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자
16. 기타 사회통념상 채용제한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

■ 운전원 응시자 해당

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(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)

- ③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<개정 2016. 1. 6., 2016. 12. 2.>
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(禁錮)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
 - 나. 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, 제5조의8,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
 - 다.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죄
 - 라. 「형법」 제332조(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),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, 제363조에 따른 죄
 2.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3.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- 가.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- 나. 「도로교통법」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같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같은 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- 다.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(사고발생일부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)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 4. 제2항에 따른 자격시험일 전 3년간 「도로교통법」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대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
- ④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. <개정 2012. 12. 18., 2016. 12. 2.>
 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·죄질,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제3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죄
 - 나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(제13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)에 따른 죄
 - 다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죄
 2. 제1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○ 가산점 특전 및 우대

- 가산점은 아래 대상 범위 중 하나만 적용
- 모든 가산점은 해당 전형의 과락 또는 불합격 기준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
- 서류 발급 시 제출처 반드시 기재(제출처: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)

대상	우대자격요건	가산점수	증빙서류
취업지원대상자	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가능자 *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	5점~10점	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장애인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상의 장애인	5점	장애인증명서

※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(보훈가점의 경우 관계법령을 따름)해야 하며, 취업보호(지원)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직렬(분야)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직렬(분야)별로 선발 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.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.

II 근로 조건

■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

○ 채용형태: 정규직

*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수탁기간: 2022. 12. 31.까지
(단, 수탁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)

- 근무지: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(중구 대종로 373, 한밭체육관 2층)
- 근무시간: 주5일, 주40시간(휴게시간 제외)
- 보수기준

채용분야	보수기준
사무원(가급)	월 2,663,120원
운전원	월 2,145,540원

- 복리후생: 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,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
- 임용시기: 2021. 10월 중(예정)

■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(업무직(대리))

○ 채용형태: 정규직

*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수탁기간: 2021. 12. 31.까지

(단, 수탁기간은 위탁기관과 협의를 거쳐 연장 여부 결정)

○ 근무지: 대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(중구 보문로 246, 대림빌딩 13층)

○ 근무시간: 주5일, 주40시간(휴게시간 제외)

○ 보수기준: 월 2,552,500원

○ 복리후생: 사회서비스원 관련 규정 및 내규 준용, 예산범위 내 수당 별도 지급

○ 임용시기: 2021. 10월 중(예정)

III 채용 절차 및 계획

전형구분	일정	비고	발표일정
채용공고	2021. 9. 17.(금) ~ 9. 27.(월)	홈페이지	-
서류접수	2021. 9. 17.(금) ~ 9. 27.(월)	홈페이지	-
서류전형	2021. 9. 28.(화)	적부심사	9. 29.(수)
필기시험	2021. 10. 2.(토)	별도안내	10. 6.(수)
면접시험	2021. 10. 12.(화)	별도안내	10. 14.(목)
결격사유조회	2021. 10. 15.(금) ~ 10. 20.(수)	별도안내	-

IV 전형별 세부사항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1. 9. 17.(금) ~ 9. 27.(월)
- 접수방법: 채용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(<https://djpass.recruiter.co.kr>)
- 제출서류 및 대상

제출서류	제출대상	제출시기
입사지원서(이력서, 자기소개서)	- 응시자 전원	지원서 접수 시
주민등록초본 * 자격기준(주거지) 확인 가능한 서류		
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		
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		
경력증명서	- 고객지원팀장 및 업무직(대리) 응시자 중 해당자	
졸업증명서		

운전경력증명서(최근 5년)	- 운전원 지원자 전원	
면허정지 등 처분사항 확인서(최근 5년)		
적성정밀검사서(최근 3년)		
교통안전체험교육 수료증	- 운전원 지원자 중 해당자	
버스운전자 교육과정 이수증	- 운전원 지원자 중 해당자	
소속기관장 추천서	- 운전원 지원자 중 해당자	
가산점 및 우대 증빙서류	- 해당자	

※ 우편 또는 방문으로는 응시원서를 접수받지 않으며, 인터넷 접수 마감일에는 응시자 폭주로 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접수 요망

※ 블라인드 채용을 위하여 작성 시 연령, 성별,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바람에 입력 금지

※ 운전원 증빙서류의 경우 최종 합격 후 재요청할 수 있음

○ 서류 전형

- 심 사 일: 2021. 9. 28.(화)
- 심사방법: 자격요건 등 적합여부 심사(적격, 부적격 결정)
- 결과발표: 2021. 9. 29.(수) /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
○ 필기시험

- 일 정: 2021. 10. 2.(토)
- 대 상: 서류전형 합격자
- 시행방법: 전공 필기시험(채용 전문업체 출제) 및 인·적성검사
- 소요시간: 약 4시간 ~ 5시간
- 시험내용
 - 인성검사: 정직성, 성실성, 근면성, 성실성 등 측정
 - 적성검사: 판단능력, 수리능력, 응용능력 등 측정
 - 전공시험: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응용능력 검증

채 용 분 야		필 기 시 험	
		인 적 성	전 공 시 험
대전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	고객지원팀장	○	일반상식(20문항) 사회복지개론(20문항) (장애인복지 포함)
	운전원	○	일반상식(20문항) 도로교통법(20문항)
대전지역 사회서비스지원단	업무직 (대리)	○	사회복지행정론(20문항) 지역사회복지론(20문항)

- 평가기준: 전공시험 각 과목별 만점의 40점 이상, 평균 60점 이상 득점 한 자 중 합산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
 - ※ 채용인원 1명 시 5배수, 2명 채용 시 4배수까지 합격
 - ※ 최하순위 동점자 발생 시 동점자 전원 면접시험 기회 부여
- 합격자 발표: 2021. 10. 6.(수) /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
○ 면접시험

- 일 정: 2021. 10. 12.(화)
- 대 상: 필기시험 합격자
- 면접형태: 경험 기반 구조화 면접(블라인드 면접)
- 면접내용: 전문성, 발전성, 창의성, 윤리관, 성실성 등

계	면접 평가 항목				
	전문성	발전성	창의성	윤리관	성실성
100점	20점	20점	20점	20점	20점

- 합격자 결정: 필기시험(70%) + 면접시험(30%) 점수 합산 결과 고득점자 순
- 합격자 발표: 2021. 10. 14.(목) (예정) /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 - ※ 동점자의 경우
 - ① 전문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
 - ② 발전성 항목의 면접위원 합산 점수가 높은 자
 - ※ 면접시험의 평균 득점이 60점 미만이고, 심사기준 중 어느 하나의 항목에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중하 이하로 평가한 경우 당해 면접시험에서 불합격으로 처리(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규)
 - ※ **예비 합격자 제도 운영**
최종합격 후보자에게 채용제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최종합격자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분야별 3명의 예비순위를 부여하고, 분야별 결원 발생 시 최종 합격 예비후보자 순위별 채용

○ 최종 합격 안내

- 합격안내: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
- 최종합격자 제출서류

제출서류	제출대상	비고
가족관계증명서	전원	-
최종학교 졸업증명서	전원	-

채용 신체검사서	전원	※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급받은 채용신체검사서 제출
재직/경력증명서	해당자	※ 경력은 경력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모두 확인되는 기간에 한하여 인정 ※ 경력증명서에는 근무처, 부서, 지위, 근무기간, 근무내용에 대한 정보가 포함

- 채용합격자 채용 신체검사결과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이상이 없을 시 임용
- 임용예정: 2021. 10월 중

V

유의사항

- 1)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2)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 내용, 일정은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내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해당 시험일 전에 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.
※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
- 3) 시험과 관련된 모든 공지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재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4)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출신학교,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력, 연령 등 개인 인적사항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5) 응시원서 및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에 기재한 모든 사항은 공고일 이전 취득한 사항이어야 하며, 모집분야 관련에 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- 6) 응시원서 기재착오,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사자 책임으로 하며,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예정으로 허위 내용 확인 시 합격 및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7) 최종합격자 통보 후 채용에서 탈락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(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서류는 제외)할 수 있으며 반환 요청 시 사회서비스원(채용기관)이 본인임을 확인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(우편 또는 직접전달)처리하고 반환 청구기간 내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보안폐기 합니다.
※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시행령 제4조 근거 / [붙임7]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참조
- 8)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불합격자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며, 채용 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채용 단계별 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으로(recruit@dj.pass.or.kr) 이의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[붙임8] 양식 참조
- 9) 시험 부정행위, 비위 채용(인사청탁, 허위 사실판명 등)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응시자격을 박탈하고 향후 5년간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 채용시험 지원을 제한합니다. (임용된 다음이라도 합격을 취소)
- 10) 대전광역시사회서비스원에서 접수 중인 타 채용공고 및 채용분야에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.
- 11) 임용된 경우에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임용이 취소됩니다.
- 12) 코로나19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

-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완치되지 않은 지원자는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응시 불가
- 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(미착용시 응시 제한)

※ 단, 감독관이 지원자 확인시에는 마스크를 벗고 본인 확인에 응해야 함

13) 기타 사항은 경영기획실 인사담당자(042-331-8907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